

보도시점 2026. 5. 28.(목) 10:30 / 배포 2026. 5. 28.(목) 08:30

불공정 관행 근절 및 하도급대금 연동제 정착을 위한 공정위 · 건설업계 상생협약 체결

- 유보금 폐지, 부당특약 시정, 납품단가 1,343억 원 인상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5월 28일(목) 전문건설회관에서 종합·전문건설업계 관계자가 참가한 가운데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협약식은 고착화된 건설업계 내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 개요 >

- 일시 : 2026년 5월 28일(목) 10:30
- 장소 : 전문건설회관 4층 중회의실(서울시 동작구 소재)
- 주요 참석자 : 총 34명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 시공능력 평가 상위 19개 종합건설사 대표이사 등

< 상생협약 추진 배경 >

공정위는 꾸준히 하도급법 집행을 통해 엄중 제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 미지급, 유보금 및 부당특약 설정 등 건설업계의 불공정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 중동 전쟁으로 인해 건설자재 등 가격이 급등하여 그 부담을 하도급 업체에 전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연동제의 원활한 작동 및 적절한 납품단가 조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불공정 관행을 시정하여 법 위반을 사전 예방하고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정착하고자 이번 상생협약을 추진하게 되었다.

< 상생협약 주요 내용 >

상생협약의 주요 내용은 ▲신속한 대금 지급 및 유보금 폐지, ▲부당특약 시정, ▲하도급대금 연동제 정착 및 비상시기 납품단가 신속 조정, ▲하도급 분쟁 해결기구 설치, ▲민관협의체 구성 등으로 공정위, 19개 종합건설사, 대한전문건설협회가 협의하여 마련한 것이다.

(유보금 폐지) 기성금의 일부(90% 내외)만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고, 잔액 지급은 준공 후까지 미루는 관행이 지속되어, 대금을 적기에 받지 못한 하도급업체는 노무비 지급, 원자재 구입 등이 원활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법정기한 내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일체의 유보금을 폐지할 것을 합의하였다.

(부당특약 시정) 산업안전비용, 폐기물 처리비용 등을 전가하여 하도급 업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부당 특약이 남아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따라 자체 점검을 통해 부당한 조항을 삭제하기로 합의하였다.

(연동제 정착 및 납품단가 신속 조정) 중동 전쟁으로 인해 주요 원자재의 공급원가가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동 조정 주기 미도래, 거래 단절 우려 등의 이유로 추가적인 비용을 하도급 업체가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하였다. 이에 따라 전쟁 등 비상시기에 납품단가를 신속히 조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원-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마련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19개 종합건설사는 상생협약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납품단가를 1,343억원 인상하기로 하였다.

※ 19개 종합건설사는 유가 급등에 따른 방수재, 단열재, 페인트, 아스콘 등 건자재 가격 인상에 맞추어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를 총 1,343억 원을 인상하기로 함(중동전쟁 이후 현재까지 340억 원을 인상하였고, 1,003억 원을 추가 인상할 예정)

(하도급분쟁 해결기구 설치) 종합건설사업자는 하도급대금 분쟁, 단가 조정 등 하도급 관련 현안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와의 원활한 협의와 자율적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내에 하도급분쟁 해결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민관협의체 구성) 상생협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협약 당사자인 공정위, 종합건설사업자, 전문건설업계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약 이행 상황, 하도급법 집행 동향, 상생협력 모범사례 등을 공유하기로 하였다.

< 참석자 주요 발언 요지 >

주병기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건설산업이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분야이지만,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불공정 거래 관행을 해소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하면서, 최근 국제정세 불안과 건설경기 둔화 등으로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지금이야말로 대형·전문 건설업계 간 상생협력으로 대내외적 위기를 함께 헤쳐 나가야하는 시기임을 강조했다.

또한 하도급법 개정('26.8. 시행 예정)을 통해 지급보증 의무를 강화하고,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적용 대상을 기존 원자재 가격뿐만 아니라 주요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하여 중소 하도급 업체가 일한 대가를 적기에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대금지급 안전망을 대폭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건설업계 내 상생협력 문화 정착을 위해 공정위, 종합건설사업자, 전문건설업계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신속히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임을 밝혔다.

협약 체결 이후 이어진 행사에서는 종합건설업계의 상생 모범사례 발표, 전문건설업계 의견 발표가 진행되었다.

먼저, 종합건설업계의 상생 모범사례 발표에서는 ▲중동전쟁에 따른 단가 인상(현대엔지니어링), ▲안전전담자 인건비 지원제도(GS건설), ▲동반성장·ESG 펀드 운영(포스코이앤씨), ▲협력사 기술개발 지원(SK에코플랜트) 등이 소개되었다.

이어서 전문건설업계는 ▲하도급 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매뉴얼 보급 등 지원과 ▲부당특약 개선과 공정한 계약관행 확립을 위한 협의체 운영 등을 건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주병기 위원장은 이번 상생협약이 건설업계 내 불공정 관행이 근절되고, 상생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모범사례는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 <붙임> 1. 공정거래위원장 개회사
 2.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서
 3. 상생협약 참여 종합건설사 목록

담당 부서	기업거래결합심사국 하도급조사과	책임자	과 장	이태휘 (044-200-5002)
		담당자	서기관	오정화 (044-200-5003)
	기술유용조사과	담당자	사무관	신덕진 (044-200-5008)
			사무관	김준엽 (044-200-5038)
신산업하도급조사과	담당자	사무관	이가영 (044-200-5056)	



붙임1

공정거래위원장 모두말씀

보도일시 : 2026. 5. 28.(목) 10:30



공정거래위원회

개 회 사

-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 -

- 일 시 : 2026. 5. 28.(목) 10:30
- 장 소 : 전문건설회관 4층 중회의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주병기**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주병기입니다.

먼저, 현업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협약식 참석을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님과

오세철 삼성물산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참석자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작년 9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갑을 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 하도급 업계와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당시 간담회에서 하도급대금의 지급 안정성을 강화하고,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실효성을 높여 달라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 「하도급법」 개정안이

올해 2월 공포되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일한 대가를 제때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대금 지급 안전망을 대폭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첫째,
하도급 대금 지급의 안정성을 보장하고자
지급보증 예외 사유를 대폭 축소하였습니다.

둘째,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원자재 가격뿐만 아니라
현장의 큰 부담이었던 주요 에너지 비용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8월 법 시행을 앞두고,
새로운 제도가 시장에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정부의 이러한 제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 깊숙이 남아있는 불공정 관행과 구조를
단숨에 바꾸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에 현장에 남아있는 불공정 관행을 뿌리뽑고,
실질적인 상생문화 확산을 이루기 위해
오늘 상생 협약식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협약을 통해
그간 고질적 병폐로 지적되어 온
일체의 유보금 관행을 폐지하고,

산업안전 비용 등을 하도급 업체에 전가하는
부당 특약을 시정하여
건설업계 내에서
동반 성장하는 건강한 관계로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특히 최근 중동 사태 등 국제정세 불안과
국내 건설경기 위축으로 인해
업계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서로간에 긴밀한 상생 협력을 통해
힘을 합쳐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상생 협력의 일환으로
하도급업체의 납품단가를 조정해주신
종합건설업계 참석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전쟁 등 비상 상황 시
긴급한 대금 조정 및 하도급 대금 연동제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정위에서도 오늘 협약식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상생·협력으로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민관협의를체를 구성, 운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편하신 방식으로
공정위가 챙겨야 할 여러 과제들을 말씀해주시면,
이를 적극 참고하여 제도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 이행 선언문

공정거래위원회와 전문·종합건설업계는 건설산업 원·하도급 거래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며, 수급사업자 보호와 상생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한다.

하나.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유보금 관행을 폐지한다.

하나. 공사용 자재 공급원가 변동 시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속히 추진한다.

하나.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한다.

하나. 하도급대금이 정당한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되도록 한다.

하나. 부당특약을 근절하고, 공정한 계약 관행을 확립한다.

2026년 5월 28일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 체결식 참석자 전원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서

이 협약에 참여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 대한전문건설협회(이하 “전문건설업계”라 한다), 종합건설사업자(전문건설업계와 종합건설사업자를 통칭하여 이하 “건설업계”라 한다)는 건설산업 원·하도급 거래에서 반복되어 온 불공정 관행의 재발을 방지하고,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실질적인 상생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건설산업 원·하도급 거래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수급사업자 보호와 상생협력 기반 조성을 통하여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약내용) 협약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설산업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협약사항으로 정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한다.

1. 건설업계는 하도급대금을 법령과 계약에 따라 60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부당한 유보금 관행을 폐지한다.
2. 건설업계는 전쟁, 국제분쟁, 원자재 가격 급등, 공급망 불안 등 불가항력적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공급원가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한 협의에 성실히 응하고 합의된 내용을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상기 사유로 공사 수행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기 연장 및 지체상금 면제 등 필요한 계약조건을 상호 협의하여 공정하게 조정한다.
3. 건설업계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과 절차를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마련한다.
4. 건설업계는 하도급대금을 정당한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하고 특히, 수급사업자가 입찰 시 제출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하도록 요구하거나 체결하지 아니한다.
5. 건설업계는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산업안전·폐기물처리 비용 등을 전가하는 일체의 부당특약 조항을 두지 아니하며, 계약서 및 첨부서류를 점검하여 부당한 조항을 삭제한다.
6. 협약에 참여하는 종합건설사업자는 하도급대금 분쟁, 단가 조정 등 하도급 관련 현안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와의 원활한 협의와 자율적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도급분쟁 해결기구를 설치·운영하거나 이에 준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 7. 전문건설업계는 성실시공과 품질·안전 확보에 힘쓰고, 현장 애로사항과 불공정 사례를 협약 당사자들과 공유한다.
- 8. 공정위는 협약사항 이행에 협조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과 정책 마련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제3조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협약 당사자인 공정위, 종합건설사업자, 전문건설업계는 2026년 하반기 중에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연 1회 이상 협약 이행 상황, 하도급법 집행 동향, 상생협력 모범사례 등을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논의한다.

제4조 (신의성실) 협약 당사자는 본 협약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 협력한다.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작성하고, 각 당사자가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5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주 병 기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 윤학수

삼성물산(주) 대표이사 오세철	현대건설(주) 대표이사 이한우	(주)대우건설 대표이사 김보현	DL이앤씨(주) 대표이사 박상신
GS건설(주) 대표이사 김태진	현대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주우정	(주)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 송치영	롯데건설(주) 대표이사 오일근
에스케이에코플랜트(주) 대표이사 김영식	IPARK현대산업개발(주) 대표이사 정경구	(주)한화 건설부문 대표이사 김우석	(주)호반건설 대표이사 박철희
디엘건설(주) 대표이사 여성찬	두산에너지빌리티(주) 대표이사 정연인	계룡건설산업(주) 대표이사 오태식	(주)서희건설 대표이사 김원철
제일건설(주) 대표이사 허만공	코오롱글로벌(주) 대표이사 김영범	(주)KCC건설 대표이사 심광주	

붙임3**상생협약 참여 종합건설사**

연번	건설사	시공능력 평가순위
1	삼성물산	1
2	현대건설	2
3	대우건설	3
4	디엘이앤씨	4
5	지에스건설	5
6	현대엔지니어링	6
7	포스코이앤씨	7
8	롯데건설	8
9	에스케이에코플랜트	9
10	IPARK현대산업개발	10
11	한화	11
12	호반건설	12
13	디엘건설	13
14	두산에너지빌리티	14
15	계룡건설산업	15
16	서희건설	16
17	제일건설	17
18	코오롱글로벌	18
19	케이씨씨건설	20

※ 시공능력평가순위는 2025년 기준, 19위(태영건설)은 워크아웃 등 사유로 불참, (주) 등 법인격 기재 생략